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이유서

의안번호	16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청소년기본법이 '93. 1. 1부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어 동법에 근거한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에 관한조례를 폐지,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함
-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
- 본 위원회 산하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,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
-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.

3. 관 계 법 령

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